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23
----------	-------

발의연월일 : 2026. 4. 9.

발 의 자 : 홍기원 · 차지호 · 소병훈
부승찬 · 허 영 · 윤후덕
문진석 · 이기현 · 윤종균
안도걸 · 박민규 · 손명수
김주영 · 이연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설비 위험, 폭발·발화·인화 위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해 일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장 내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물질·제품·기구 별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분산화·파편화되어 있음.

이에 사업장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조

치, 시설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제38조 및 제39조”를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고위험 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①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 등을 사업장 내에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고위험 물질의 종류별·등급별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시설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위험 물질의 종류별·등급별 안전조치, 보건조치, 시설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중 “제38조 및 제39조”를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로 한다.

제159조제1항제1호 중 “제39조”를 “제39조, 제39조의2”로 한다.

제166조의2 전단 중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로 한다.

제167조제1항 중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8조제1호 중 “제51조”를 “제39조의2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제38조 및 제39조</u>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p> <p>② · ③ (생략)</p> <p><u><신 설></u></p>	<p>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 2</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39조의2(고위험 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①</u> <u>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 등을 사업장 내에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고위험 물질의 종류별·등급별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u></p>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

치, 보건조치, 시설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위험 물질의 종류별·등급별 안전조치, 보건조치, 시설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

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생략)

② · ③ (생략)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

-----.

1. -----제39조, 제39조의2-----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

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

제167조(벌칙) ① -----

----- 제
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
조의2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8조(벌칙) -----

1. -----

----- 제39조의2제1

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생략)

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

2. (현행과 같음)